

## 농산물우수관리시설 (지정·갱신)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40일
신청인	시설명		
	조직명(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
	소재지	전화번호	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,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우수관리시설 (지정·갱신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우수관리인증기관 귀하

신청인 (대표자) 첨부서류 (지정신청 시)	1.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각 1부 2.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1부 3.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및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처리규정 등을 적은 우수관리시설 사업계획서 1부 4.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
신청인 (대표자) 첨부서류 (갱신신청 시)	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 1부	

수수료

※ 수입인지 붙임란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